



한양사이버대학교 AI 활용 가이드라인(안)

온라인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AI 윤리 및 활용 기준



2026. 8.

한양사이버대학교 AX사업단

목 차

구분	내용
I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유와 성격
II	핵심 원칙
III	AI 활용 기준 및 데이터 등급
IV	HYCU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프로토콜 연계
V	대상별 세부 실행 가이드 (교수 / 학생 / 직원)
VI	AI 사용 표시 기준
VII	강의 콘텐츠 보호와 저작권
VIII	대학의 역할과 부서별 책임
IX	판단 원칙 및 소명·이의신청 절차
X	개정 및 문의

표기 안내

본 문서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을 고려한 내용이며
향후, 본교 규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음

I.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유와 성격

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이미 AI를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음. 학생은 학습과 과제에, 교수는 강의 콘텐츠 제작과 연구에, 직원은 행정 업무에 AI를 사용함. 비대면·온라인 교육 환경이라는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상 AI와의 접촉 빈도는 일반 대학보다 높음.

AX사업단은 본교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 연구원, 관련 외부 인력 포함)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

본 가이드라인에서 지칭하는 '승인 플랫폼'이란,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에듀케이션 워크스페이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Gemini Enterprise(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말함.

향후, 승인 플랫폼의 목록은 계약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본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

- 본 가이드라인 위반은 그 자체로 징계 또는 학사상 불이익의 근거가 되지 않음.
- 부정행위 판단 및 처분은 학칙, 학사관리규정, 연구윤리규정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며, 본 가이드라인은 해당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됨.
-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규범적 효력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의 개정 또는 신설을 통해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시기는 소관 부서 간 협의할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의 수준 및 효력

구분	내용
성격	본교 모든 구성원이 공통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준수사항임.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수준임.
부서 자율	각 부서의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실행이 가능함.
우선 적용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지침이 본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함.
미제정 부서	세부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부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함.

[표 1-1] 규범의 적용 순위

순위	규범	비고
1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최우선 적용
2	학칙 및 본교 내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정보보안 규정, 연구윤리 규정 등)	법령 다음 순위
3	각 부서·학과가 제정한 세부 지침	부서 업무 특성 반영
4	본 AI 활용 가이드라인	상위 규범이 정하지 않은 사항의 준거

부서 세부 지침이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본교 내규와의 정합성에 관하여 저작권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및 전략기획팀(필요시 자문변호사)와 협의 할 수 있음.

■ 적용 대상과 범위

구분	내용
인적 범위	전임교원, 겸임·초빙·객원교원, 직원, 조교, 학생, 연구원, 위탁·용역 인력 외부 관련 인력이 본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구성원에 포함함
활동 범위	온라인 강의, 원격 평가, 이러닝 콘텐츠 제작, 비대면 행정 처리 등 대학 활동 전반
대상 산출물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 코드 등 모든 유형의 AI 생성물
행위 범위	AI를 직접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AI 생성물의 수용, 수정, 공유, 인용, 재배포에도 준용함

■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인공지능	데이터를 학습하여 판단, 예측, 생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생성형 인공지능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을 새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AI 산출물	인공지능이 생성하거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결과물 전체
비공개정보	개인정보, 학생 성적 및 상담 기록, 인사·급여 정보, 미공개 연구자료, 계약 및 감사 자료, 시험 문항 등 외부 공개가 제한된 정보
승인 플랫폼	본교가 계약을 통해 도입하여 사용을 승인한 AI 서비스. 최신 목록은 변경시마다 공지 예정
사람의 최종 검토	AI 산출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담당자가 사실관계·적법성·적절성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절차 검토를 다시 인공지능에 맡기는 방식은 사람의 최종 검토로 인정하지 않음

II. 핵심 원칙

모든 세부 규정은 아래 다섯 가지 원칙에서 파생됨. 세부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원칙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함.

[표 2-1] 5대 핵심 원칙

원칙	핵심 내용	온라인 교육 환경 적용
1. 투명성 (Transparency First)	AI 사용 사실은 과목, 연구, 행정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기록함 공개·기록 항목: 도구명, 제공사, 버전(필요시), 사용 목적, 사용 범위, 사용 날짜(기간), 주요 프롬프트 또는 그 요약 약식 공개 시: 도구명 (강의자료, 토론, 과제 제출 시)	LMS 내 제출물, 토론 게시판, 팀 프로젝트 공간에서의 AI 사용도 반드시 명시함
2. 인간 주도 (Human in Command)	AI는 보조 도구이며 독립적 의사결정권자, 저자, 발명자,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음 결과물의 정확성, 적법성, 윤리 준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음 AI 산출물은 반드시 사람의 검토와 판단을 거쳐 사용함	자동 채점, 추천, 챗봇 응답 등 LMS 내 AI 기능의 결과도 담당자가 최종 확인함
3. 정보 보호 (Data Stays Safe)	본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함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미공개 연구자료 등은 외부 상용 AI에 입력하지 않음 내부 자료는 승인 플랫폼을 우선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가명처리 및 최소입력 원칙을 적용함	온라인 강의 영상, 학습자 데이터, 수강 이력 등 디지털 학습 정보는 비공개 등급으로 취급함 비공개 등급 콘텐츠의 무단 배포·공유 시 배포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4. 학문적 정직성 (Academic Integrity)	AI를 사용한 표절, 대리작성, 허위 인용, 데이터 조작, 퀴즈·시험 부정, 성과 왜곡은 기존 부정행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함 과목별 허용 정도에 따라 평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AI 사용 시 출처는 모든 경우에 명기함 AI 결과물을 본인 고유의 창작물이나 독립적 판단 결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됨 교육부의 '대학연구자를 위한 생성형 AI 연구윤리 가이드'의 내용을 연구 영역 AI 사용의 기준으로 함	비대면 평가 환경에서 AI 사용 여부는 LMS 접속 이력, 제출 과정 기록 등을 통해 종합 판단함
5. 윤리와 공정 (Fair & Ethical Use)	AI 결과물의 편향, 차별, 혐오, 허위정보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함 온라인 원격 학습자의 다양한 배경(지역, 연령,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AI 사용 환경을 조성함	평가, 선발, 민원, 안내 등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설명 가능성과 이의제기 가능성을 함께 고려함

Ⅲ. AI 활용 기준 -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아래 세 가지 신호 기준으로 판단함.

단, 기준은 부서의 세부 지침이 본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함.

[표 3-1] 신호등 기준

신호	기준	예시 (온라인 교육 환경 기준)
허용	자유롭게 사용 가능 (투명성 원칙 준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문법·맞춤법 교정, 공개 자료 요약 학습 개념 질문, 코드 디버깅 보조, 온라인 강의 요약 보조 번역 초안 작성, 공개 정보 기반 회의록 초안 정리
조건부 허용	조건부 사용 가능 (사전 확인·허가 필요)	과제 및 리포트 작성 보조 - 과목별 교수의 허용 범위를 LMS 공지에서 반드시 확인 연구 논문 초안 작성 - 학술지 지침 준수 이러닝 콘텐츠 초안, 대외 문서 초안 - 사람의 최종 검토 필수 각 과목의 허용 범위를 고려하여 반드시 출처 명기
금지	절대 금지	개인정보·비공개 데이터의 외부 AI 입력 온라인 시험·퀴즈에서의 무단 AI 사용 AI 결과물을 본인 창작물로 위장 제출 허위정보·혐오표현 생성, 딥페이크·사칭·위조 미공개 강의·연구 자료 외부 입력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함

[표 3-2] 데이터 등급별 입력 원칙

등급	해당 정보 유형	AI 입력 원칙
공개	공식 공개 자료, 학교 홈페이지, 공개 논문, 교수가 외부 공유를 허용하는 오픈 강의자료 등	외부 AI 사용 가능 저작권 준수, 학습 옵션 비활성화 권장
내부	일반 업무자료, 내부 공지, 온라인 강의 운영 자료, 회의 자료 등	승인 플랫폼 우선 사용 외부 플랫폼 사용 시 데이터 학습 제외 설정을 반드시 활성화 업로드 내용 최소화 및 민감정보 가명처리 필요(필요시 정보처는 가명처리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또는 솔루션 적용을 지원할 수 있음)
비공개	비공개 개인정보, 수강자 학습 데이터, 미공개 연구 데이터, 학사·인사·재무 정보, 심사 중 원고	외부 AI 입력 절대 금지 법령에 근거한 승인 도구를 통한 처리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데이터 등급의 정의와 등급별 사용 가능 범위는 정보처가 관리하며, 정보보호실이 그 적정성을 감독함.
등급 판단이 어려운 자료는 상위 등급(비공개)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등급 운영의 세부 기준은 본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범위 내에서 정보처·정보보호실과 협의할 수 있음.

IV. HYCU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프로토콜 연계

본교는 학사안내 > 학습/평가 항목을 통해 'HYCU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프로토콜'을 공지하고 있음. 본 가이드라인은 해당 프로토콜을 교수-학습 영역의 상위 준거로 삼으며, 아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함.

출처: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사안내 > 학습/평가 > HYCU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프로토콜 (www.hycu.ac.kr)

■ 생성형 AI의 개념과 작동 원리

구분	내용
개념	대화,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일종.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사전 훈련된 기계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함
작동 원리	거대 언어 모델(LLM)로부터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입력값을 넣어야 하며, 이 입력값을 프롬프트(Prompt)라 함 높은 품질의 응답을 얻기 위해 프롬프트의 조합을 찾는 작업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함
LLM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텍스트·이미지·영상을 인식하고 변환하며 가공 또는 생성하는 데 쓰이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일종
유형별 종류	문서(Text): GPT, EleutherAI, Bloom 등 이미지(Image): Dall-E, Midjourney, Stable Diffusion 등 스피치(Speech): Hugging Face Models 등 영상(Video): Make-a-video 등

[표 4-1] 인재상·10대 핵심역량 연계 생성형 AI 활용 프로토콜

인재상	10대 핵심역량	활용 프로토콜
교양인	자율책임, 자기관리	자기 주도적인 자세로 책임감 있게 생성형 AI를 사용한다. (자율책임) 성인학습자로서 생성형 AI를 자주적으로 사용하고 AI가 제공하는 지식을 재구성하여 내재화할 수 있어야 함 (자기관리) 생성형 AI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발전시킴
전문인	지식탐구, 종합적사고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데 생성형 AI를 사용한다. (지식탐구) 학문적 이론과 방법론을 폭넓게 탐구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종합적 사고)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가장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실용인	창의, 협의조정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한다. (창의)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새롭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함 (협의조정)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만족 수준의 실용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사용해야 함
세계인	글로벌소통, 책임의식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한다. (글로벌소통) 언어·비언어 장벽을 허물어 타인의 생각, 감정,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함

인재상	10대 핵심역량	활용 프로토콜
		(책임의식) 개인의 이익 추구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함
봉사인	공감, 나눔	공동체와 교감하고 사회에 헌신하도록 생성형 AI를 사용한다. (공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공감과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 (나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사회구성원 전체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확산시켜야 함

[표 4-2]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권고사항

대상	권고사항
공통 (교수자·학습자)	생성형 AI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교수-학습 적용 시 장단점을 파악함 생성형 AI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전공 지식 기반으로 프롬프트 입력 방법을 숙지함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함
교수자	교수자는 수업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함 수업에 적용되는 생성형 AI 사용 지침을 수업계획서에 명시함 필요 시 학습자에게 사용 가능한 생성형 AI 목록을 제공함 학습자에게 생성형 AI의 장점과 한계점을 설명할 것을 권고함 학습자에게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된 표절이나 부정행위의 범위를 설명할 것을 권고함
학습자	생성형 AI를 이용한 학습 결과물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음을 인지함 생성형 AI를 사용한 학습 결과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함 수업 활동이나 과제물에 대한 생성형 AI 사용에 관해 교수자가 제시한 지침을 숙지함 생성형 AI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시 표절이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V. 대상별 세부 실행 가이드

같은 AI 도구라도 역할에 따라 기대되는 사용 수준과 책임이 다름.

승인된 플랫폼을 적절하게 사용하되, 이외 플랫폼 사용 시 개인정보 사용을 원천 금지함.

구분	내용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원본 가명처리하였으나 다른 자료와 결합할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정보 가명처리하였다고 보았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이 가능해지는 정보 결합 용이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보처와 정보보호실 등 소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음

■ A. 교수

교수는 생성형 AI의 허용 여부를 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도 학생이 개념 이해,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글쓰기·코딩 역량을 스스로 발휘하도록 강의 콘텐츠, 과제, 평가를 설계·운영하는 설계자이자 안내자임. 모든 강의가 LMS를 통해 운영되므로, LMS 공지를 통해 AI 허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할 책임이 있음.

해당 내용은 공통 가이드이며,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우선순위로 작동함.

[표 5-1] 강의계획서 및 LMS 공지 필수 명시 사항

구분	명시 내용
사용 범위	온라인 과제·토론·퀴즈·프로젝트·발표에서의 AI 사용 허용 여부 및 범위
허용 도구	허용 도구 유형(승인 플랫폼 우선)
표시 방법	AI 사용 표시 및 인용 방법을 반드시 제시
안내 시점	학기 시작 시점에 공지하며, 사전 안내 없이 AI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음

[표 5-2] LMS 공지 표준 기재 문구 예시

유형	표준 문구
① 전면 허용	EX : 본 교과목은 생성형 AI의 사용을 학습 도구로 허용합니다. 단, AI 사용 시 도구명, 사용 목적, 사용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AI 출력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사고와 분석을 반영하여 재구성해야 합니다.
② 조건부 허용 (과제별 제한)	EX : 본 교과목은 일부 과제에 한해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합니다. 허용 범위는 LMS 과제 안내문에 별도로 명시하며, 온라인 퀴즈 및 시험에서는 AI 사용이 금지됩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한 AI 사용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학문적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평가 시 전면 제한	EX : 본 교과목의 온라인 퀴즈, 시험 및 평가 과정에서는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평가는 학생 개인의 독립적 사고와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반 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표 5-3] AI 사용 내역 작성 예시

형식	작성 예시
간단 표기형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보고서 초안의 개요를 설계함(0000.00.00.). 최종 문장 작성과 근거 정리는 작성자가 직접 수행함.
표 형식	① 도구명: [도구명·버전] ② 목적: 초안 구조 설계 ③ 범위: 개요 구성 ④ 날짜: 0000.00.00. ⑤ 수정·보완: 사례 추가 및 논증 재구성
과제 말미 기재	본 과제는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용 범위는 아이디어 발산과 초안 구조 설계에 한정함. 최종 내용 구성, 자료 검증, 표현 수정은 작성자가 수행함.

[표 5-4] 평가 유형별 원칙

평가 유형	AI 사용 가능 여부	평가 종류
통제형 평가 (Secure Assessment)	AI 사용 원칙적 제한	온라인 시험, 시간 제한 퀴즈 등 평가를 위한 모든 콘텐츠
개방형 평가 (Open Assessment)	AI 사용 가능 (과목별 허용 범위 준수)	리포트, 프로젝트, 발표자료, 캡스톤, 포트폴리오, 토론 게시글 등

교수의 최종 평정 책임: 자동 채점이나 AI 피드백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최종 점수와 평가 의견은 교수가 전건 확인하여 확정함.

AI 탐지 도구의 한계 인식: 탐지 결과는 단독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의심 시 LMS 접속 이력, 제출 이력, 학생 소명 등을 종합 판단함.

학습 이력 확인의 범위: LMS 접속 이력 등 학습 기록의 확인은 본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한 이용 목적과 절차에 따르며, 확인이 필요한 사안의 범위·절차·당사자 고지 방법에 관하여는 정보처 및 수업지원팀과 협의할 수 있음.

합리적 편의 제공: 장애 학생, 원격지 수강자 등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과목담당교수 허가 하에 AI 사용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표 5-5] 과제·평가 설계 권고 - AI를 전제로 한 설계

AI 사용 여부를 적발하는 방식보다, 학생 본인의 사고와 경험이 드러나도록 설계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함.

설계 방법	내용	과제 지시문 예시
과정 평가	최종 산출물뿐 아니라 자료 조사 기록, 초안, 수정 이력, 판단 근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최종 보고서와 함께 ① 참고 자료 목록과 선택 이유, ② 초안과 최종본의 차이 및 수정 이유, ③ AI를 사용한 경우 입력한 주요 프롬프트와 그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여 반영 또는 배제하였는지에 관한 설명을 제출하십시오.
개인 맥락 요구	학습자 본인의 직무 경험, 근무 현장 사례, 거주 지역 사례를 근거로 서술하도록 함	본 과제는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본인이 근무하거나 경험한 조직의 사례를 근거로 작성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조직명은 익명으로 표기하고, 소속 기관의 비공개 자료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강의 내용 연계	특정 차시의 자료, 토론 게시판의 특정 발언, 교과목 고유 사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도록 함	강의 3차시에서 다룬 분석 틀을 본인의 사례에 적용하고, 해당 틀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서술하십시오.

설계 방법	내용	과제 지시문 예시
AI 산출물 비평	AI가 생성한 답안을 제시하고 오류·누락·편향을 찾아 근거와 함께 수정하도록 함	첨부한 답안은 생성형 AI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실 오류, 논리적 비약, 국내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세 가지 이상 찾아 지적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수정한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적용과 판단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제시하고 선택과 그 이유를 요구함	제시된 사례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셋입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배제한 이유를 본인의 판단 기준과 함께 서술하십시오.
확인 절차	화상 구술, 실시간 질의응답, 후속 질문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함	제출 후 화상 확인이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물의 내용에 관한 후속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인 학습자의 직무 경험을 과제에 반영하도록 설계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비공개 정보가 제출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함. (EX : 졸업프로젝트 등에 특정 소속기관이나 기관의 프로젝트 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함)

[표 5-6] 연구에서의 준수사항

구분	내용
저자 표기	인공지능은 저자가 될 수 없으며, 논문의 저자로 표기하지 않음
입력 제한	미공개 연구데이터, 심사 중 원고, 연구계획서, 개인정보를 외부 상용 AI에 입력하지 않음
지침 준수	학술지·학회·연구지원기관의 AI 사용 지침이 본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함
기록 보존	AI 사용 도구명, 버전, 제공사, 사용 목적, 사용 범위, 사용 날짜, 프롬프트 요약을 연구 기록으로 보관함
검증 및 리뷰	AI 생성 분석, 요약, 코드는 반드시 사실 검증 및 코드 리뷰를 거침. 제시된 참고문헌과 수치는 연구자가 원문을 직접 확인함
연구부정	AI를 사용하여 실험 데이터, 이미지, 통계 결과를 생성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교는 교육부의 '대학연구자를 위한 생성형 AI 연구윤리 가이드' 및 본교 연구윤리 규정을 기준으로 연구에 참고하시길 권유함

[표 5-7] 교수를 위한 AI 활용 자가 점검

단계	점검 내용	확인
강의 설계	LMS 공지에 AI 사용 허용 여부·범위·표시 방법을 명시했는가?	☐
강의 설계	온라인 환경에서도 핵심 학습목표를 학생이 스스로 달성하도록 과제를 설계했는가?	☐
콘텐츠 제작	AI가 생성한 내용의 사실 정확성, 오개념 여부를 검증했는가?	☐
콘텐츠 제작	강의 영상, 학습자 데이터 등 비공개 정보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았는가?	☐
콘텐츠 제작	AI로 생성한 음성·영상·가상 인물을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했는가?	☐
평가 시	자동 채점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교수가 최종 평정 책임을 지는가?	☐
평가 시	AI 탐지 결과만으로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합 판단하는가?	☐

단계	점검 내용	확인
연구 활동	미공개 연구데이터, 심사 중 원고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았는가?	☐
연구 활동	AI 생성 분석·요약·코드에 대해 사실 검증 및 코드 리뷰를 거쳤는가?	☐

■ B. 학생

AI는 결과를 대신 제출하는 도구가 아니라, 질문을 정교화하고 정보를 탐색하며 자신의 판단과 표현을 발전시키는 학습 도구임. 사이버대학교 학생은 온라인 환경 특성상 AI에 더 쉽게 노출되므로, 사실 확인·비판적 검토·재구성을 통해 AI 결과를 자신의 학습 성과로 전환하는 능력이 중요함.

학생은 수업지원처나 교육혁신처에서 현재 또는 향후 지정할 학습 시 AI활용 세부 원칙을 우선하여 준수하도록 함

[표 5-8] 학생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교육·학습·평가	과목별 정책 확인 필수: LMS 강의계획서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담당 교수에게 직접 문의함 무단 사용은 부정행위: 온라인 퀴즈·시험에서의 AI 사용 또는 허용 범위 초과는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학문적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사용 사실 명시: 도구명, 사용 목적, 사용 범위, 사용 날짜를 기재함 복사·붙여넣기 제출 금지: AI 출력물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어로 요약·비판적 분석·재구성하고 근거를 제시함 사실·인용 검증 필수: AI는 가짜 인용과 허위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인용과 수치, 개념은 원 출처로 재확인함 소명자료 보관 권장: 과제 수행 과정(LMS 제출 이력, 작성 기록, 버전 히스토리)을 보관하여 AI 사용 의심 시 소명할 수 있도록 함 부정행위라 판명되어 불이익이 가해졌을 경우, 소속 부서 또는 해당 과목 교수에게 직접 소명 가능
개인정보·보안	상용 AI 서비스에 주민번호, 연락처, 건강정보 등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음 미공개 강의자료, 과제, 타 학생 작업물을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음 학부연구, 논문, 캡스톤 등은 지도교수와 허용 범위 및 표시 방법을 사전 합의함
강의 콘텐츠	온라인 강의 영상·음성·교안은 비공개 등급 콘텐츠이며, 무단 배포·공유 및 외부 AI 입력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표 5-9] 학생을 위한 AI 활용 자가 점검

단계	점검 내용	확인
과제 제출 전	이 과목 LMS 공지에서 AI 사용이 허용된 범위인지 확인했는가?	☐
과제 제출 전	AI가 만든 부분과 내가 만든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가?	☐
과제 제출 전	AI 결과물의 사실관계(인용·수치·개념)를 원 출처로 직접 확인했는가?	☐
과제 제출 전	AI 없이도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사용 표시	도구명, 사용 목적, 사용 범위, 사용 날짜를 기재했는가?	☐
사용 표시	AI 출력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요약·재구성했는가?	☐
개인정보	상용 AI에 개인정보(주민번호, 연락처 등)를 입력하지 않았는가?	☐
개인정보	미공개 강의자료, 타 학생 작업물을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았는가?	☐

■ C. 직원

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자산을 다루는 1차 책임자임. 본교는 학습 플랫폼, 학사 시스템, 원격 행정 서비스 등 디지털 인프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AI 도입과 사용 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표 5-10] 직원의 5대 의무와 책임

원칙	내용
1. 인간 우선	AI가 생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모든 행정적 의사결정의 법적·윤리적 책임은 담당 직원과 보직자에게 귀속됨
2. 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	개인정보와 비공개 행정 정보는 외부 상용 AI에 입력하지 않음. 학습자 데이터, 수강 이력, 접속 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는 비공개 등급으로 취급함
3. 투명성 및 사용 기록 관리	AI를 사용한 중요 의사결정이나 대외 문서 작성 시, 사용 도구·목적·범위·날짜를 내부 기록으로 남김 사용 기록은 업무 투명성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며 보관 기간과 열람 권한은 소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음
4. 윤리적 사용 및 공정성	AI 결과물의 차별·혐오·편향 표현을 점검하고, 딥페이크 제작·사칭 등 기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5. 설명가능성과 권익보호	AI가 민원 응답, 분류, 선발 보조 등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담당자는 사용 범위와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표 5-11] 업무 영역별 AI 사용 기준과 유의사항

업무 영역	사용 가능 업무	유의 사항 (사람의 검토 지점)
문서 작성	보고서·기획서 초안, 회의록 정리, LMS 공지문 작성, 영문 이메일 번역	최종본은 반드시 담당자가 사실관계·수치·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포하며,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확인을 거침
자료 조사·분석	정책 자료 수집, 법령·지침 요약,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트렌드 조사	AI 환각(할루시네이션) 주의, 원출처 반드시 재확인. 통계 자료는 기존 통계와 대조 확인 후 공표
반복 업무 자동화	정형화된 양식 작성, 데이터 정리, 수료증 발급 프로세스 보조	자동화 결과의 정확성 검증 필수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의 외부 AI 입력 금지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정보처 등)와 협의하여 반드시 가명처리하며 처리 방식과 범위를 소관부서와 협의필요
소통·홍보	홍보 콘텐츠 초안, SNS 게시물 아이디어, 온라인 챗봇 응답 설계	대외 공개 전 편향·부적절 표현 검토 필수, 이미지 저작권 확인
민원·상담	FAQ 기반 민원 응답 초안, 규정 해석 초안, 온라인 민원 분류 보조	민원 회신은 사람이 최종 확인하며, AI 단독 자동 판단 및 회신을 금지함 AI 기반 응대 시 이용자가 사람이 아닌 시스템과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람에게 연결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안내함
인사·계약·감사	일반 참고자료 조사에 한정	인사, 채용, 징계, 장학, 예산 배분은 AI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판단 근거와 최종 결정을 담당자가 기록함

업무 영역	사용 가능 업무	유의 사항 (사람의 검토 지점)
		계약·감사·규정 해석·법률 문서는 AI 산출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침

[표 5-12] 직원을 위한 AI 활용 자가 점검

단계	점검 내용	확인
입력 전	입력하려는 자료의 데이터 등급(공개·내부·비공개)을 확인했는가?	☐
입력 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명처리를 하였는가?	☐
도구 선택	승인 플랫폼을 우선 사용하고, 외부 도구는 학습 제외 설정을 확인했는가?	☐
검토	대외 발송 전 사실관계·수치·표현을 직접 검토했는가?	☐
기록	사용 도구·목적·범위·날짜를 내부 기록으로 남겼는가?	☐
보안	계정·비밀번호·인증키·내부 시스템 접속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는가?	☐
보안	확장 프로그램·외부 연동 도구 설치 전 정보처에 확인했는가?	☐

VI. AI 사용 표시 기준

AI 사용 표시는 감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작업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전문성의 표현임.

[표 6-1] 영역별 표시 기준

영역	표시 기준
교육	LMS 공지 및 해당 과목 정책에 따르되, 평가에 영향이 있는 AI 사용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선언함
연구	학술지, 학회, 연구지원기관,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AI 사용 범위와 역할을 공개함
행정	내부적으로 AI 사용 여부, 검토자, 검증 근거를 기록하는 것을 권장함

[표 6-2] 표시 수준 구분

수준	적용 대상	조치
1단계 (기록)	사실관계에 영향이 없는 보조 - 맞춤법 교정, 표 정렬, 용어 통일	대외 표시 생략 가능, 부서 기록으로만 관리
2단계 (간단 표시)	초안 작성, 구성 정리, 요약 등 내용에 관여한 경우	문서 말미에 한 줄 표기
3단계 (상세 기재)	연구물, 대외 공표물, 평가·심사 관련 문서	도구·제공사·버전·목적·범위·시기·프롬프트 요약 전체 기재

[표 6-3] 표시 항목

항목	기재 내용
도구명	사용한 AI 서비스 또는 모델, 버전 정보 및 제공사
사용 목적	초안 작성, 검토, 요약, 분석 보조, 번역, 코드 생성 등
사용 범위	결과물 중 AI를 사용한 구체적 부분
사용 날짜(기간)	AI를 사용한 날짜 또는 기간
프롬프트 기록	사용한 프롬프트 기록을 최대한 남기고, 어려운 경우 주요 프롬프트 내용을 요약 기재

[표 6-4] 상황별 표시 문구 예시

상황	표시 문구 예시
강의 자료	본 자료의 일부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으며, 담당 교원이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약식 표시 시: [클로드 사용], [LICENSED BY SHUTTERSTOCK] 등
강의 음성·자막	본 차시의 자막은 AI 음성인식으로 생성한 후 교원이 수정하였습니다. 약식 표시 시: [클로바 사용] 등
학생 과제	본 과제 작성 과정에서 [도구명]을 자료 조사 및 문장 교정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약식 표시 시: 자료조사 및 문장교정의 일부 [클로드 사용]
논문	본 연구의 원고 교정 과정에 [도구명,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저자가 확인하였습니다.

상황	표시 문구 예시
	약식 표시 시: 원고교정의 일부 [클로드 사용]
행정 문서	본 문서의 초안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으며, 담당자가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약식 표시 시: 문서 일부 [클로드 사용]
회의록	본 회의록은 녹취 자료를 AI로 1차 정리한 후 담당자가 발언 내용을 대조·수정하였습니다. 약식 표시 시: 녹취 1차 정리 [클로드 사용]
이미지·영상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것입니다. 약식 표시 시: [클로드 사용], [LICENSED BY SHUTTERSTOCK] 등

[표 6-5] 학술 인용 방법

스타일	형식	비고
APA	OpenAI. (Year). ChatGPT (Month Day version) [Large language model]. https://chat.openai.com	미국심리학회 양식. 본문 인용에 저자와 연도를 강조함 (예: 김한양, 2026)
MLA	"Exact prompt you used" prompt. ChatGPT, Day Month version, OpenAI, Day Month Year, chat.openai.com.	현대언어학회 양식. 본문 인용에 저자와 페이지 번호를 강조함 (예: 김한양 108)

[표 6-6] LMS 공간별 표기 위치 (지면의 여백에 따라 자유로이 표기 가능)

공간	표기 위치	예시
과제 제출물	본문 마지막 줄	AI 사용: [도구명] / 자료 조사 및 개요 구성 / 0000.00.00. 본문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토론 게시판	게시글 하단 괄호	(본 의견의 근거 자료 정리에 AI를 사용하였으며, 주장과 결론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팀 프로젝트	산출물 표지 다음 장에 팀 공통 기재	구성원별 담당 구간과 AI 사용 구간을 표로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교원 공지사항	공지 말미	본 공지지의 문안 정리에 AI를 사용하였습니다.

Ⅶ. 강의 콘텐츠 보호와 저작권

본교는 강의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제작·유통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함.

[표 7-1] 보호 대상과 권리 관계

보호 대상	정보 등급	권리 관계
강의 영상, 강의 음성	비공개 등급 콘텐츠	본교 규정 및 콘텐츠 제작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강의 교안, 자막, 강의노트	비공개 등급 콘텐츠	본교 규정 및 콘텐츠 제작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평가 문항, 정답, 채점 기준	비공개 등급 콘텐츠	저작물성 여부와 별개로 비공개 정보로 보호되며, 유출 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학생 제출 과제, 토론 게시물	비공개 등급 콘텐츠	저작권은 작성 학생에게 있음. 교육·홍보 목적 사용 시 사전 동의 필요

강의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은 저작권법, 본교 규정 및 개별 제작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귀속 관계와 이용 범위는 소관 부서와 협의할 수 있음.

[표 7-2] 금지 행위와 관계 법령

금지 행위	법적 성격	관계 법령
강의 영상·음성·교안을 무단 녹화·녹음하여 외부에 공유·배포하는 행위	저작권재산권(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를 요함(제140조)
강의 영상·음성·교안을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여 요약·재생·재배포하는 행위	저작권재산권 침해 및 비공개 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본교 정보보안 규정
원본 강의 영상을 변형하여 유포하는 행위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13조, 제136조 제2항
교원·학생의 얼굴이나 음성을 동의 없이 합성하여 제작·유포하는 행위	인격권(초상권·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얼굴·음성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됨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학생 제출물을 동의 없이 교육·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AI에 입력하는 행위	학생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본교 규정

타인 저작물의 수업 목적 이용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수업 목적 이용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 범위 내에서만 적용됨. 외부 공개, 상업적 이용, AI 학습 데이터로의 제공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교원이 외부 저작물을 AI에 입력하여 강의 자료를 제작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이용 조건과 산출물의 이용 범위를 확

인한 후 사용함.

본교 강의 콘텐츠의 외부 사용

- 교원이 본교 강의 콘텐츠를 외부 강의, 개인 채널, 타 기관 교육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부서와 이용 범위를 협의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에 확인함. 인용된 법령 조문은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함.

Ⅷ. 대학 부서의 점검항목

가이드라인은 구성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 대학도 구성원이 AI를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

아래 표의 역할은 권유이며 부서별 협의를 통해 역할 조정 가능함

[표 8-1] 부서별 세부 지침 제정 시 점검 항목

구분	점검 항목
대상 업무	AI 사용이 잦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식별하였는가
허용 도구	사용 가능한 서비스와 계정 유형(기관/개인)을 정하였는가
입력 제한	입력 금지 자료를 예시 수준까지 구체화하였는가
검토 절차	사람의 최종 검토 단계와 검토자를 지정하였는가
표시 방법	AI 사용 사실의 표시 기준을 정하였는가
기록	사용 이력의 보관 여부와 기간을 정하였는가
개인정보	본교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는가
사고 대응	오류·유출 발생 시 정보처 보고 절차를 정하였는가
교육	소속 구성원 대상 안내 주기를 정하였는가

개인정보 처리 또는 정보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 지침은 제정 전 관련 부서(정보처, 정보보호실)의 검토 후 관련 부서에 공유함.

[표 8-2] 인프라·교육 및 사고 대응

구분	내용
인프라	전 구성원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AI 플랫폼 및 LMS 연계 AI 도구를 구축함
교육	교수, 학생, 직원 등 전 구성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이러닝 콘텐츠 형태로 상시 수강 가능하도록 운영함
거버넌스	신규 AI 플랫폼 도입 시 정보처(보안·개인정보) 및 인사총무팀(법무)의 검토를 의무화함 LMS 내 AI 기반 서비스(자동 채점, 추천 시스템, 챗봇 등)에 대해 공정성, 투명성, 설명가능성을 확보함
사고 대응	학사부정, 연구윤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보안 사고 등에 대한 대응 및 징계 프로세스를 정비함 AI 관련 침해나 사고 발생 시 온라인 신고 창구 및 대응 체계에 관하여 소관 부서 간 협의할 수 있음
입시·선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입시 및 선발 과정에서의 AI 사용 원칙을 수립함
공개	본 가이드라인을 국문 및 영문으로 병기하여 LMS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제공함

[표 8-3] 개인정보 보호 관련 확인·협의 사항

AI 서비스의 도입과 운영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경우 아래 사항의 확인이 필요함. 각 항목의 구체적 이행 방법과 시기는

소관 부서 간 협의할 수 있음.

구분	확인 사항	관계 법령
처리 위탁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AI 서비스 도입 시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사실 공개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국외 이전	국외에서 처리되는 서비스의 경우 정보주체 고지 또는 처리방침 공개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자동화된 결정	성적·선발 등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준·절차 공개 및 거부·설명 요구 대응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이용 목적	접속 이력·학습 기록을 학사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근거와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기록 관리	직원 AI 사용 기록의 보관 기간, 열람 권한, 사용 범위	본교 관련 내규에 준함

IX. 판단 원칙 및 소명·이의신청 절차

학사부정, 연구윤리 위반, 개인정보 및 보안 사고, 초상권 침해,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함.

단, 사안의 중요성(가중치)과 상호간 협의 정도에 따라 단계 검토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종합 판단 원칙

AI 사용 여부의 판단은 탐지 도구의 추정치 아니라, LMS 제출 이력, 접속 이력, 제출물의 내용, 과정 기록, 면담 결과, 근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탐지 결과는 단독 증거로 사용하지 않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처분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본 가이드라인은 그 해석 기준으로 참고됨.

[표 9-1] 대표적인 위반 사안

사안 유형
학사부정 (시험·과제·성적)
연구부정
개인정보·정보보안 사고
저작권·인격권 침해

사안 유형이 중복되거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심의 소관을 정할 수 있음.

[표 9-2] 소명 및 이의신청 절차

단계	담당	내용	처리 기한(권고)
1차 소명·이의	관련 부서 또는 소속 학과 (교과 담당 교수)	판단 결과를 통보받은 구성원은 관련 부서 또는 소속 학과에 소명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판단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소명서, 작성 과정 기록, 버전 히스토리 등 근거자료를 제출함 본 단계에서 해결 시: 서면 회신 없이 구두로 해결 가능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2차 재검토	관련 부서 또는 소속 학과 (교과 담당 교수)	제출된 소명자료와 판단 근거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면담을 실시함 재검토 결과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함 본 단계에서 해결 시: 관련 학과에서 공문을 통해 검증기관(정보처, 정보보호실)에 해결 사항 통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 검토	소관 부서(담당교수) 및 AX사업단 담당자가 참여하여, 관련 위원회를 통해 최종확정	1·2차 절차로 해소되지 않은 사안은 최종적으로 정보보호실과 정보처를 통해 검토함 정보처(정보인프라혁신팀): 접속 이력, 제출 이력 등 기술적 사실관계 확인 실무를 담당함 정보보호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 측면의 적정성을 감독 관점에서 검토함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

단계	담당	내용	처리 기한(권고)
		처분의 최종 확정은 표 9-1의 사안별 심의 소관에서 하며, 정보처·정보보호실의 검토 결과는 그 판단 자료로 제출됨 최종 검토 결과는 신청인과 관련 부서에 함께 통보함 본 단계에서 해결 시: 관련 학과에서 최종 검토 결과를 공문을 통해 검증기관(정보처, 정보보호실)과 신청인에게 함께 통보함	

각 단계의 처리 기한은 권고값이며, 학칙상 성적 정정 기간 등 기존 절차와의 정합성에 관하여는 소관 부서와 협의

불이익 처분 시 유의사항

- AI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안내된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만 이루어짐. 사전 안내가 없었던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음.
- 처분 통보 시 판단 근거와 이의신청 절차를 함께 안내함.
- 이의신청 진행 중 원 처분의 집행 보류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와 협의할 수 있음.
- 대학은 신고자 및 이의신청인을 보호하며, 신고 또는 이의신청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

[표 9-3] 사고 신고 체계

구분	신고 대상	신고 체계
보안 사고	AI 서비스를 통한 정보 유출, 계정 탈취, 악성 코드 등	소관 부서나 담당 교수에게 1차 신고 후 부서 담당자와 담당교수는 AX사업단 담당자(0883)에게 내용 상세 전달. AX사업단은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 후 위원회를 통해 신청사항 처리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의 외부 AI 입력, 무단 수집·제공 등	
학사부정	온라인 시험·과제에서의 AI 무단 사용 등	
연구윤리 위반	AI를 사용한 데이터 조작, 허위 인용 등	
저작권·인격권 침해	강의 콘텐츠 무단 배포, 딥페이크 제작 등	

X. 개정 및 문의

구분	내용
검토 주기	현업 현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이 필요하므로 학기별로 재검토함
의견 수렴	온라인 교육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분쟁 사례, 개선 요구를 LMS 설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렴함
개정 사유	기술 변화뿐 아니라 실제 운영 사례(위반, 오해, 민원, 보안사고)를 반영하여 개선하며, 관련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반영함
규정화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규범적 효력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의 개정 또는 신설을 통해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시기는 소관 부서 간 협의할 수 있음
시행	본 가이드라인은 제정일부터 시행함

AI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나갑시다.